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
운영 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지역 노사민정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, 고용·노동현안 의제 발굴 및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을 안정적·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사무국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

나. 추진근거

- 「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
-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의제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
-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및 실무협의회, 분과위원회 운영
-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발굴

라.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4. 12. 31.(3년)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

바. 소요예산 : 254백만원(3년간) 예상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 사업비	2022년	2023년	2024년
계	254	82	85	87
인건비	240	78	80	82
운영비	14	4	5	5

○ 사업비 세부내역('22년 예산신청 기준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산출내역	사업비
합 계			82,780
인건비	인건비(사무국장)	3,000,000원×12월	36,000
	인건비(사무원)	1,915,000원×12월	22,980
	4대 보험료	580,000원×12월	6,960
	퇴직급여충당금	450,000원×12월	5,400
	여 비	100,000원×2명×12월	2,400
	식 비	140,000원×2명×12월	3,360
	명절휴가비	200,000원×2명×2회	800
운영비	사무용품비	167,000원×12월	2,000
	복사기 임차비	150,000원×12월	1,800
	통신비	50,000원×12월	600
	정수기 임차비	40,000원×12월	480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
나. 관계법령

- 「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에 따른 재정수반요인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운영에 따른 세출의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나 올해 기준 운영비 등의 소요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, 추산했을 때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.(2021년 기준 : 76,770천원)

4. 작성자

- 노동복지과 노사정책담당 강홍구 (054-480-6202)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계획

1. 민간위탁 대상

- 사 업 명 :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
- 사무국위치 : 구미시 산호대로 185, 3층(근로자권익지원센터)
- 운영규모 : 2명(사무국장, 사무원)
- 위탁사항
 -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
 -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의제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
 -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및 실무협의회, 분과위원회 운영
 -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발굴

2. 민간위탁 내용

- 위탁근거
 - 「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
 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- 목적 및 필요성
 -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, 노사민정 각 주체의 폭넓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·능률성·지속적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○ 총사업비(예정) : 254백만원(3년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 사업비	2022년	2023년	2024년
계	254	82	85	87
인건비	240	78	80	82
운영비	14	4	5	5

- 사업비 세부내역('22년 예산신청 기준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산출내역	사업비
합 계			82,780
인건비	인건비(사무국장)	3,000,000원×12월	36,000
	인건비(사무원)	1,915,000원×12월	22,980
	4대 보험료	580,000원×12월	6,960
	퇴직급여충당금	450,000원×12월	5,400
	여 비	100,000원×2명×12월	2,400
	식 비	140,000원×2명×12월	3,360
	명절휴가비	200,000원×2명×2회	800
운영비	사무용품비	167,000원×12월	2,000
	복사기 임차비	150,000원×12월	1,800
	통신비	50,000원×12월	600
	정수기 임차비	40,000원×12월	480

○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

- 신청자격 :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노사관련 기관 중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비영리법인·단체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

3. 추진계획

○ 추진일정(안)

주요내용	일 정	비 고
① 공모공고(시 홈페이지)	2021. 12월	
② 신청서 등 접수	"	
③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	2022. 1월	
④ 협약체결	"	

관계법령

□ 「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9조(사무국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(출자·출연기관 포함)에서 노사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노무업무 전문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채용 한다.

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

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김 팔 근
	담 당	최 경 덕
	담 당 자	강 홍 구 (480-6202)